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17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2. 2. 15.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713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신축공사가 진행될 것을 전제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38,6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는데, M이 옥천군수에게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됨으로써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의 전제사실인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38,68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옥천군수가 M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였기 때문인데, 옥천군수의 불허 처분 사유는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사면 안정 재검토 결과가 미흡하고 산사태 등 재해대책이 미흡하여 인근 지역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고속도로 등에 인접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고, 등산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인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원고의 객관적 상황의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초 M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옥천군수의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으로 인하여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